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 1조 (이용계약의 목적)

1.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.
2.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,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.
3.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.

제 2조 (이용계약의 기간)

1.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,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 단,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.
2. 제 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.
3.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,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.

제 3조 (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)

1.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되, 가·감산율에 의하여 10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한다.
 - 나. 사업소는 수급자에서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 산정한다.
 - 다.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 보호 서비스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.
 - 라.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%(장기요양보험법 기준)에 해당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.
**본인일부부담금: 일반(15%) / 경감,의료급여(6~9%) / 기초수급자(0%) **
 - 마.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.
 - 라. 본인일부부담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. 다만, 대여품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.
2.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가. 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일부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,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. 다만,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일부 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.

제 4조 (계약의 해제)

1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① 미사용 구매품목의 반품 시
 - ② 대여품목의 조기회수 요청 시
 - ③ 시설입소에 따른 대여품목의 공급불가시
 - ④ 계약의 해지의 경우,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금액을 정산한다.
2.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하여 대여품목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에 따라 새롭게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.
3. 계약의 변경 시 대요품목의 경우, 대여기간에 따라 배송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.